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세 무 과]

-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세무과장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감면 동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2022.10.29.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바, 우리구에서도 유가족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은 감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사고의 대상자는 우리구로 통보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그 유가족이 대상입니다.
* 우리구는 사망자 한 분이 통보되어 그 유가족(부모)이 감면 대상임.
 - 감면 세목 및 감면율은,
정기분 세목 중 유가족 생계에 일부 도움이 되는 세목으로 분류한 주민세 사업소분, 재산세 등이 해당되고 감면율은 전액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 기간은 2023년 한 해로 한정하였고 유가족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구 자체에서 직권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액 규모는
 - 2022년 부과금액 기준으로 총 1백 3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이번 구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009_23012
------	-----------

제출년월일 : 2023. 1. 20.
제출자 : 달서구청장
(세무과장)

1. 제안 이유

- 2022.10.29.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법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바, 우리구에서도 유가족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 2020.3.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따른 경우로서, “재해”의 사전적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 “자연재난” 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사회재난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10.30.) -

2. 주요 감면 내용

가. 감면 대상

(사망자 및 유가족) 보건복지부 및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통해 집계되어 자치단체로 통보되는 사망자 및 유가족*

* 유가족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우리구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 : 사망자 김○○의 부모 (호산동 거주)
 - 행정안전부 및 대구시에서 통보된 사망자 및 유가족 명부에 의거 파악 (1명)

나. 감면 세목 및 감면율 (2023년도에 한함)

①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 상기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를 면제한다.
 - 지방세법 제111조에 해당하는 세율의 100% 감면

② (주민세) 사업소분

- 주민세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 2022년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세율의 100% 감면

※ 감면세목 선정 :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세 목	부과대상	납기	비고
① <u>주 민 세</u>	•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시세·구세
	•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시세
	•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구세
② <u>지역자원 시 설 세</u>	• 사망자 가족 (소방분)	7월, 9월	시세
③ <u>취 득 세</u>	•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 말 내	시세

다. 2023년 감면 예상액 (2022년 부과액으로 추계)

- 감면 예상액 (구세 1,284천원 정도)

지방세 합계	구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비고
3,512,550원	1,284,650원	2,227,900원	2022년 기준 작성 (신고납부세목 제외)

라. 기타 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3년도 과세분(정기분)에 한하고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동의안」 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한다.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및 공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 지방세법 제80조, 제81조, 제110조, 제111조 등
-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

참 고 1 관 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총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같은 호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

① 추진배경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10.30.)
-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② 지방세 감면 추진

① 지원 방식

-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

② 감면 대상자 (이하 “유가족”)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③ 감면 내용

- '22. 12. 자동차세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 민 세 개 인 분* 자동차세 소 유 분	•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② 재 산 세 지역자원 시 설 세	•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시·군·구
	• 사망자 가족 (소방분)		
③ 취 득 세	•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내	특·광역시, 도